

# 한국콘텐츠진흥원 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무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(이하 “보호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진흥원과 보호원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협력의 범위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콘텐츠 유통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연계지원 등 상호 협력
2. 콘텐츠 기업에 대한 IP비즈니스, 수출, 투자, 지식재산 등 교육을 위한 협력
3.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진행 협조
4. 콘텐츠 산업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, 정보의 교류 및 공유
5. 기타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

**제3조(협약의 이행)** 양 기관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.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정보의 제공)**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지원기업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

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협약서의 해석)**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.

**제7조(협약의 변경 및 중단)**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**제8조(효력)** 본 협약의 효력은 진흥원과 보호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17일



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 영 준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be "김영준",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.

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이 해 평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be "이해평",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.